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개정법률안

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조제1항제2호 중 “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사업자등록 신청서의”를 “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”으로, “사업자등록 신청서의 사업자등록일”을 “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사업자등록일”로 한다.

제10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”을 “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”으로 한다.

제38조제2항에 제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3. 법 제63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재에 관한 업무
제41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“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”을 “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(제7호의 사무만 해당한다)와 같은 영”으로 한다.

부 칙

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행	개정안
제3조(창업기업의 범위) ① 법 제2조제3호, 제6호 및 제10호에 규정된 “사업을 개시한 날”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날로 한다. 1. (생략) 2. 창업기업 또는 재창업기업이 개인인 경우: 「부가가치세법」 제8조제1항에 따라 신청하는 <u>사업자등록 신청서의</u> 개업일(법 제45조에 따른 공장 설립계획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에는 <u>사업자등록 신청서의</u> 사업자등록일을 말한다)	제3조(창업기업의 범위) ① ----- ----- ----- -----. 1. (현행과 같음) 2. ----- ----- <u>제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</u> ----- ----- ----- ----- <u>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</u> -----
② (생략) 제10조(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) ① (생략) ② <u>법 제23조제2항 및 제3항</u> 에 따라 부담금을 면제받으려는 창업기업은 중소기업부령으로 정하는 부담금 면제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·군수·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. 1. ~ 4. (생략) ③ ~ ⑤ (생략)	② (현행과 같음) 제10조(부담금 면제의 절차 및 방법)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법 제23조제3항 및 제4항</u>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제38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(생략) ② 중소기업부장관은 법 제61	제38조(권한의 위임 및 업무의 위탁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

현행	개정안
조제2항에 따라 창업진흥원에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위탁한다. 1. 2. (생략) <u><신설></u> ③ ④ (생략) 제41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(생략) ② 중소기업부장관(제38조에 따라 중소기업부장관의 업무를 위탁받은 자를 포함한다)은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9조에 따른 주민등록번호, 여권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. 1. ~ 7. (생략)	----- -----. 1. 2. (현행과 같음) 3. 법 제63조에 따른 창업지원사업에 대한 참여제한 등 제재에 관한 업무 ③ ④ (현행과 같음) 제41조(민감정보 및 고유식별정보의 처리) ① (현행과 같음) ② ----- ----- ----- ----- 「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」 제18조제2호에 따른 범죄경력자료에 해당하는 정보(제7호의 사무만 해당한다)와 같은 영 --. 1. ~ 7. (현행과 같음)